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심사전

1. 의결주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의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그 실적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집배보로금 및 발착보로금 지급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집배 및 발착업무의 직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제13조의2 제2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10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를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로 변경한다.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10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1호에서 5호”를 “가에서 마”로 한다.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배업무 또는 발착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보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과 우편물별 지급률 등에”를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과 제1항2호에 따른 직무 실적의 산정기준 등에”로 한다.

부칙<제000호, 2020. 0. 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u>다음 각 호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10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u>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 ----- <u>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u>
<신설>	1. <u>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u>
1.~5.(생략)	<u>가~마.(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u>
<신설>	2. <u>집배업무 또는 발착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u>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과 우편물별 지급률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② ----- <u>보상금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과 제1항2호에 따른 직무 실적의 산정기준 등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	
연 락 처	044-200-8126